2027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www.duksung.ac.kr

To Foster Creative Intellectuals with More Virtue

자유와 도전으로
앞서가는 덕성 맞춤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2027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수시모집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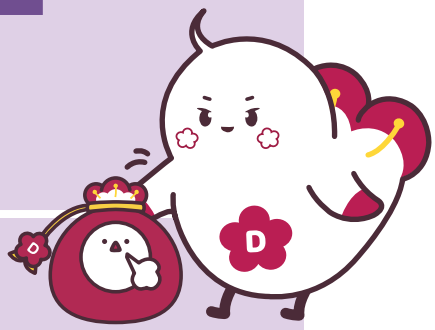

CONTENTS

03 Ⅰ.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
04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05 Ⅲ. 전형일정
08 Ⅳ. 지원자격
09 Ⅴ. 지원자격 인정기준
12 Ⅵ. 전형방법
13 Ⅶ. 선발원칙 및 평가관련 유의사항
14 Ⅷ. 제출서류
19 Ⅸ. 지원자 유의사항
21 Ⅹ. 전형료
22 Ⅺ.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24 Ⅻ. 기숙사 및 기타사항 안내
25 XIII. 입학상담 및 교통편 안내
26 [별첨] 제출서류 양식
지원자 수학기간 기록표, 학력조회 동의서,
제3국 수학기간 사유서, 유학경비 부담서약서,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사유서
32 재외 한국학교 현황
33 Campus Map

DUKSUNG WOMEN'S UNIVERSITY

Ⅰ.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

덕성 교육의 변화

다채로운 전공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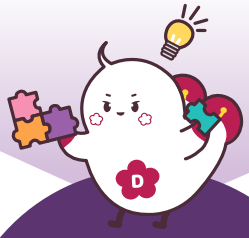

다양한
전공 조합 가능

수도권 대학 최초
전면 자유전공제

자기주도적인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

자유전공학부 입학

- **계열 제한없이 제1전공 선택 가능**
- 1학년 동안 전공 탐색 후 2학년 진학시, 계열과 무관하게 전공/학부 선택 가능
- **대학 내 모든 전공 선택 가능** (인원 제한 없이 100%)
  - 유아교육과, 약학과, Art & Design대학, 미래인재대학(가상현실융합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AI신약학과) 제외

단과대학 입학

- **입학한 단과대학 내에서 제1전공 선택**
- 입학한 글로벌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Art & Design대학 소속 전공 중 1학년 2학기 성적 확정 이후 (입학 차년도 1월) 제1전공 지망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Art & Design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실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중에서만 제1전공 선택

- **제1전공 배정 이후 제2전공은 단과대학 제한 없이 선택**
- **원하는 전공의 심화 이수부터 제2전공(+제3전공)까지 학생 선택에 따라 결정 가능**
- **졸업증명서에 제1,2전공 구분 없이 전공명 표기**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전공	입학정원의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글로벌융합대학	국어국문학전공★	3	제한 없음 (약학대학 제외)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스페인어전공★		
	사학전공		
	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문화인류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법학전공		
	사회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심리학전공★		
	아동가족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의상디자인전공★		
과학기술대학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부	2	
	바이오공학전공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화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약학대학	약학과	8	
Art & Design 대학	동양화전공★	2	
	서양화전공★		
	실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미래인재대학	자유전공학부	8	
합계		23	-

★표는 현재 교직과정 개설 전공입니다.

※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부」에는 IT 최신 트렌드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5개의 트랙(빅데이터 트랙, 웹 & 앱 트랙, 인공지능 트랙, 사물인터넷 트랙, 사이버보안 트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트랙명 등 세부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원서접수	2026. 7. 7.(화) 10:00 ~ 7. 9.(목) 16:00	• 인터넷 접수만 실시함 (www.duksung.ac.kr) • 마감일 16:00까지 접수
	제출서류 접수	2026. 7. 7.(화) 10:00 ~ 7. 16.(목) 16:00 ※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서류 미제출자'로 불합격 처리함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마감일: 2026. 7. 16.(목) •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방문 또는 제출처: (우) 01369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 427호 입학관리과
	제출서류 접수확인	2026. 7. 21.(화) 이후	•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 (enter.duksung.ac.kr)
합격자발표 및 등록일정	최초합격자 발표	2026. 8. 28.(금) 11:00	• 우리 대학 홈페이지 (www.duksung.ac.kr) 발표 • 개별 통보하지 않음
	최초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6. 12. 21.(월) 09:00 ~ 12. 23.(수) 15:00	• 마감일 15:00까지 등록 • 온라인 문서등록 내용 p.22 참고
	충원합격자 발표	2026. 12. 24.(목) 10:00 ~ 12. 29.(화) 18:00	• 개별 통보(전화 연락) • 충원합격자 발표마감 : 2026. 12. 29.(화) 18:00까지
	충원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6. 12. 24.(목) 10:00 ~ 12. 30.(수) 16:00	• 마감일 16:00까지 등록 • 온라인 문서등록 내용 p.22 참고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7. 2. 10.(수) 09:00 ~ 2. 12.(금) 16:00	• 우리 대학 홈페이지 (www.duksung.ac.kr) 확인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09:00 ~ 2. 12.(금) 16:00	• 하나은행 및 전국은행(계좌이체) 마감일 16:00까지 납부

1. 원서접수 안내

가.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6. 7. 7.(화) 10:00 ~ 7. 9.(목) 16: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단, 마감일은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많아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기관 및 문의처

(주)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1544-7715

다.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duksung.ac.kr)로 접속하여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배너 클릭	• 인터넷 원서접수 배너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대입표준공통원서 통합회원 가입 (보호자 등 타인 명의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	
유의사항 확인	•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확인(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료 등)
▼	
원서 작성 및 사진 첨부	• 인적사항, 연락처, 지원자격, 모집단위 등 정확히 기입, 누락 또는 표기의 잘못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최종 입력 내용 확인, 전형료 결제 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결제 전 모든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전형료 결제	•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 완료 • 전형료 결제 후 접수 취소 및 지원자격, 모집단위 변경 불가
▼	
접수 확인 및 출력	• 접수 및 수험번호 확인 • 등기우편발송용 봉투표지 및 제출서류 출력
▼	
수험번호 및 성명 기재	• 제출서류 각 장의 우측 하단에 인터넷 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서류제출 목록은 p.14~18 참고
▼	
서류 제출	• **우리 대학 입학관리과로 제출(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제출기간: 2026. 7. 7.(화) 10:00 ~ 7. 16.(목) 16:00 ※ **제출기간 엄수**, 우편접수 마감일 [2026. 7. 16.(목)]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www.jinhakapply.com)로 접속하여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대입표준공통원서 통합회원 가입 (보호자 등 타인 명의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	
덕성여자대학교 선택	• 학교 선택 이후의 접수 과정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접속 시와 동일함

- 원서접수는 전형료가 결제되어야 완료됩니다.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원서내용의 수정 및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전형료 결제 전에 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학원서 업로드용 사진 안내

- 원서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증명사진 또는 반명함판 사진으로 얼굴 정면 전체가 나온 사진이어야 합니다.
- 상반신 사진, 배경 사진, 옆모습 사진,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게 수정된 사진,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어려운 사진, 해상도가 낮은 사진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입학원서 수정요청 게시판)를 통해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입력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연락처 기재 누락, 전화번호 오기, 타인번호 기재,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연락처 변경 등 변경사항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우리 대학은 원서접수 전문기관에 원서접수를 위탁 처리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학전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입학업무와 관련(충원합격자 발표, 등록 안내, 지원자격 심사 중 제출서류 사실유무 확인 및 추가 서류제출 요청, 신입생 OT 안내 등)된 메일 및 SMS 수신 등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우리 대학의 학적부 생성, 학생증 발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 서류 제출

■ **제출기간: 2026. 7. 7.(화) 10:00 ~ 7. 16.(목) 16:00**
- [2026. 7. 16.(목)]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제출처:**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 427호 입학관리과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서류 미제출자'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해당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발급 받아 모든 제출서류의 우측하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 미제출자'와 지원자격 심사 결과 '지원자격 미충족자'는 불합격자로 처리되며, 전형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전에 지원자격 해당여부와 서류 제출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등기우편 우편발송용 봉투표지**를 서류봉투에 부착하여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하며, 우편물 분실에 대비하여 서류도착 여부 확인 전까지 등기우편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에는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서 서류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국외발행서류 등 서류제출 기간 중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의 경우 입학처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에도 지원자격 및 기타사항의 확인 등으로 인한 추가 서류제출을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구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미제출자'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모집요강 14~18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Ⅳ. 지원자격

1. 공통 지원자격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단, 일본, 싱가포르 소재 고교는 2027년 3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자
-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자격구분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여자
  (단, 국외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지원에 제한이 없음)

※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공지한 지원자격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자격구분별 지원자격

가. 입학정원의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구분	지원자격
국외근무자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세부 지원자격 요건

구분	기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지원자와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유학/교육/연수/출장 등 목적의 국외 거주는 제외).
국외재학기간	• 지원자가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자가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국외체류일수 조건	• 지원자가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273일)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243일)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지원자가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함

나. 정원의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구분	지원자격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 자 ② 우리 대학 글로벌교육원 한국어과정 3급(중급1) 이상 수료(예정) 자 ※ 국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 자 ② 우리 대학 글로벌교육원 한국어과정 3급(중급1) 이상 수료(예정) 자 ※ 국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항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학력인정: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 소지자

V. 지원자격 인정 기준

1. 국외학교 인정 기준

가. 국외에 소재하고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나.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상황(전쟁, 천재지변 등)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 우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대학 양식의 '제3국 수학기간 사유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국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학제 인정기준: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국외 교육과정 수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소재국가	학년제	학년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국내	12학년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국외	12학년제 (Grade)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13학년제 (Year)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3

※ 학제가 13학년제인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정규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나라 학제(12년)와의 대응 관계를 고려하여 인정함

마.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12년 미만 학제에서 12년 학제로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합니다.

바.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원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가 있으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사. 국내외 검정고시(미국, 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이수자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2. 국외학교 재학기간 인정 기준

가. 재학기간은 지원자가 실제로 재학한 기간이며,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나. 1개 학년이 3 term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1·2 term을 모두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2·3 term을 모두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3 term을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다. 지원자의 국외학교 이수기간은 부모의 국외 근무 기간 내에 해당국에서 거주·재학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라.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 기간은 국외학교 재학기간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으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수 기간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 이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마. 학제 차이에 따른 미이수·중복이수 또는 월반·조기졸업 등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 총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자격을 인정하되, 위 범위를 초과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미이수 학기 수가 중복학기 수보다 1개 학기 이내이면 인정합니다(총 23학기 이상 충족 필수).

바.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사.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지원자격 서류심사표]에서 인정/불인정 예시

1) 12년 전 교육과정(연속 24학기) → 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	24
국외학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2	23
국외학교																	16	17	18	19	20	21		

3)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1개 학기가 부족하고 1개 학기가 중복되는 경우 → 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3	24
국외학교																	16	17	18	19	20	21	22	

4)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2개 학기가 부족하고 1개가 중복되는 경우 → 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국외학교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5)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중복이 비연속 2개 학기이고 3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9	10	11	12	13					18	19					
국외학교				5	6	7	8						14	15	16	17					20	21	22	23

6)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중복이 연속 2개 학기이고 3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불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2	23
국외학교											13	14	15	16			17	18	19		20	21		

7) 12년 전 교육과정 중 동일학교에서 월반으로 2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국외학교																	17	18	19	20	월	반	21	22

8) 12년 전 교육과정 중 전·편입학 과정에서 월반으로 인해 2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불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국외학교															월	반	15	16	17	18	19	20	21	22

※ 전·편입학 시 월반 미인정

9) 12년 전 교육과정 중 2개 학기 이상이 누락된 경우 → 불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21	22
국외학교													13	14			16	17	18	19	20			

3. 부모의 근무·체류기간 인정기준

가.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국외 재직/체류/재학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국외 근무, 체류기간 산정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 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 부모의 근무기간, 체류기간

- 국외 근무기간: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국외 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
- 국외 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

4. 졸업 예정자

국내·외 정규 교육과정 졸업자는 졸업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 26일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대학 입학 후 고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졸업 예정자로 지원하여 최종 등록한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의 재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의 졸업 증명 관련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 관련 서류, 출입국 및 재직 관련 서류(해당자)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일본 등 3월 졸업 국가는 2027.3.31.(수)까지 제출

5. 기타사항

가.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복수 국적자는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인정합니다.

라.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VI. 전형방법

1. 전형유형 및 평가방법

구분		전형방법 및 비율
		서류평가
입학정원의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100%
정원의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100%
	북한이탈주민	100%

2. 서류평가 방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종합 정성평가

가. 평가서류: 성적증명서, 활동증빙서류(선택) 등
나. 평가요소: 자기주도역량, 학업역량, 탐구역량, 공동체역량

3. 서류평가 기준

가. 서류평가는 평가서류를 근거로 지원자 1인당 평가자 2인 이상이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정의	배점
자기주도역량	• 스스로 목표를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30
학업역량	•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기초학습역량	20
탐구역량	•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25
공동체역량	• 개방적, 포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기본 윤리에 따라 책임감을 발휘하는 역량 •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역량	25
총점		100

※ 서류평가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4. 서류평가 등급

7단계 평가	A+	A	B+	B	C+	C	D

5.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서류평가 단계에서 입학사정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서류평가 총점(1,000점 만점)에서 감점(결격)사항을 적용합니다.

조치 사항	감점 점수
1호~2호	감점 여부 심의
3호~4호	최대 100점~최소 50점 심의
5호	200점
6호	300점
7호~9호	결격 처리

VII. 선발원칙 및 평가관련 유의사항

1. 합격자는 전형 및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2. 합격자는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서류평가 성적 중 자기주도역량 평가점수, 공동체역량 평가점수, 탐구역량 평가점수, 학업역량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정원의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의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합니다.
3. 입학전형의 개인별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미등록자로 인한 여석 충원은 총점 순에 따르며, 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제외 3배수까지 발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5. 지원자격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회신의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모 또는 본인이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7. 최종등록자에 대하여 추후 학력 조회를 실시합니다.
8. 입학한 후에라도 필요한 경우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입학한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11.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VIII. 제출서류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table>
<tr><th>자격구분</th><th>제출서류</th></tr>
<tr><td>국외근무자 자녀</td><td>
■ 공통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 [우리 대학 양식,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가능]
② 지원자 수학기간 기록표 [우리 대학 양식]
③ 학력조회 동의서 [우리 대학 양식]
※ 국외에서 재학한 중·고교별 각 1부(국외에서 재학한 중·고교별 수만큼 작성해야 함)
④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⑤ 초·중·고 성적증명서(또는 성적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
※ 초 → 중 → 고 순서대로 제출
※ 국외고 재학한 경우, 학사일정표, 출신고교 프로파일도 제출
⑥ 초·중·고 재학(사실)증명서
※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⑦ 출입국 사실증명서 [지원자, 부, 모]
※ 복수 국적자는 해당하는 모든 국적의 여권에 해당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 지원자의 국외 재학기간, 국외 근무 보호자의 근무기간 등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
⑧ 여권 사본 [지원자, 부, 모]
※ 복수 국적자는 해당하는 모든 국적의 여권 사본 제출
⑨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부, 모]
⑩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부, 모]
⑪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지원자, 부, 모]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서명 후 제출
⑫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및 증빙서류(선택)
⑬ 결손 사유서(해당자)
⑭ 월반 확인서(해당자)
■ 추가서류(해당자)
<table>
<tr><td>국외 파견
재직자</td><td>① 부모 중 1인의 재직증명서(해외주재증명서) 또는 경력증명
(근무지 및 근무기간, 체류내용 명시)
② 해외직접투자승인서(허가서) 또는 해외 지사 설치인증서 사본(상사주재원만 해당)
※ 국내 은행권에서 발급
※ 공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td></tr>
<tr><td>현지
취업자</td><td>① 부모 중 1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근무지 및 근무기간, 체류내용 명시)
②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③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사본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취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td></tr>
<tr><td>현지
자영업자</td><td>①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②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사본</td></tr>
</table>
</td></tr>
</table>

※ '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각 장의 우측 하단에 인터넷 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원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2026. 6. 9. 이후 발급)이며, 국외발급서류는 발급기준일 기준 적용 제외합니다.

2. 정원의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table>
<tr><th>자격구분</th><th>제출서류</th></tr>
<tr><td>정원의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td><td>
■ 공통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 [우리 대학 양식,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가능]
② 지원자 수학기간 기록표 [우리 대학 양식]
③ 학력조회 동의서 [우리 대학 양식] (북한이탈주민 제외)
※ 국외에서 재학한 초·중·고교별 각 1부(국외에서 재학한 초·중· 고교별 수만큼 작성해야 함)
④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고교 졸업(예정)증명서(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증명 서(각 시·도 교육청 발급) 제출 가능
■ 추가서류(해당자)
<table>
<tr><td>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td><td>① 초·중·고 성적증명서(또는 성적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
※ 국외고 재학한 경우, 학사일정표, 출신고교 프로파일도 제출
② 초·중·고 재학(사실)증명서
※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③ 출입국 사실증명서 [지원자]
④ 어학 관련 증빙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 글로벌교육원 한국어과정 3급(중급1)이상 수료증 등]
⑤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지원자]
⑥ 신분증 사본 [여권 등]</td></tr>
<tr><td>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td><td>① 초·중·고 성적증명서(또는 성적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
※ 국외고 재학한 경우, 학사일정표, 출신고교 프로파일도 제출
② 초·중·고 재학(사실)증명서
※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③ 출입국 사실증명서 [지원자]
④ 어학 관련 증빙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성적증명서,
우리 대학 글로벌교육원 한국어과정 3급(중급1)이상 수료증 등]
⑤ 외국국적증명서 [시민권 사본, 여권 사본 등]
⑥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
※ 앞, 뒷면 모두 복사하여 제출
⑦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지원자]

[합격 후 제출서류]
• 재정보증 서류: [재정보증인의 USD 20,000 이상 국내외은행 등 예금 잔고증명서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USD 20,000 이상 국내 송금, 환전 증명서]
※ 보증인이 내국인인 경우 재산세 납입증명서 제출
•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우리 대학 소정양식, 해당자]
※ 유학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한 지원자에 한함</td></tr>
<tr><td>북한
이탈주민</td><td>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②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td></tr>
</table>
</td></tr>
</table>

※ '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각 장의 우측 하단에 인터넷 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원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2026. 6. 9. 이후 발급)이며, 국외발급서류는 발급기준일 기준 적용 제외합니다.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서류제출 기간 중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국외 발행서류 등)의 경우, 입학처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6. 7. 7.(화) 10:00 ~ 7. 16.(목) 16:00**
- [2026. 7. 16.(목)]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제출처:**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 427호 입학관리과

나.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상의 성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라. 국외 소재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국외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국외 학교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및 기타 공문서)는 반드시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제출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최종 합격 후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재외교육기관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마. '학력조회 동의서'는 재학한 국외 소재의 초·중·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일 이후 발급 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2027년 2월 19일(금)까지 우리 대학 입학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전형' 서류제출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 외에 본인의 활동을 추가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이며,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전형'에 한함).**
- **사유서를 제출할 지원자는 반드시 해당 학교 및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모든 서류의 제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부담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미비로 평가 및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이로 인한 원서접수 취소와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 재학사실 증명 및 졸업 증명, 성적 증명 등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이러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되면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30페이지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작성가이드 참고)

[작성 가이드]

1.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며, 학교 및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등을 통하여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진 및 발급기관이 없는 비문서 제출 불가하며, 기재 시 평가 제외)
2. 활동구분에는 아래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표기합니다(최대 5개 작성 가능).

㉮ 비교과 활동서류	소속학교(기관) 수상경력,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증빙서류
㉯ 표준화 학업입증서류	IB, AP, SAT, ACT, A-Level 성적 등
㉰ 어학 증빙서류	증빙하고자 하는 언어의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등),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등

3. 활동내용은 활동명과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내용과 지원자의 역할,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작성합니다.
4. 교사추천서 또는 제3자의 기록을 옮겨적는 것은 불가하며, 지원자의 직접적 서술만 기록으로 인정합니다.
5. **입증서류 증빙은 활동별 A4용지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축소 및 확대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표준화 학업입증서류와 비교과 활동서류는 발행기관에서 상장,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1매의 리스트로 발급하는 경우는 페이지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6. **모든 성적 증빙(어학 증빙 서류 등)은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고등학교 재학 당시 취득한 성적만 인정). 응시한 지역은 국내외 어느 곳이어도 무방합니다.**
7. **학업입증서류 및 공인어학성적 제출 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적표 우측 상단에 해당 사이트의 ID, PW를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1) 우리 대학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에 기재할 수 있는 활동은 최대 5개입니다.
2) '㉮ 비교과 활동서류'의 경우 한 건의 문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1개의 활동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3) '㉯ 표준화 학업입증서류', '㉰ 어학 증빙서류'는 개별 성적이 1건의 증빙이 되므로 각각 1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 모든 성적 증빙(어학 증빙 서류 등)은 고등학교 졸업 이전 성적만 인정됩니다. 응시한 지역은 국내외 어느 곳이어도 무방합니다.

(예시)

연번	활동구분	활동명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내용 (100자 이내)	증빙 페이지
1	㉮ 비교과 활동서류	고등학교 교내 수학경시대회 대상, 환경보호동아리 회장	2023.3.1. (고등학교 교내 수학경시대회 대상), 2021.3.2.-2023.6.30. (환경보호동아리)	… 고등학교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	1
2	㉯ 표준화 학업입증서류	SAT	2024.3.1.	SAT … 과목에서 … 점을 취득하고, … 과목에서 … 점을 취득하여	2
3	㉰ 어학 증빙서류	TOEIC	2024.4.1.	TOEIC LC에서 … 점을 취득하고, RC에서 … 점을 취득하여 …	3
4	㉰ 어학 증빙서류	TOEFL	2024.5.1.	TOEFL … 점을 취득하여 …	4
5	㉰ 어학 증빙서류	JLPT	2024.6.1.	JLPT … 급을 취득하여 …	5

※ 증빙 페이지는 서류 순서대로 하단에 페이지 표시

카. 국외학교 학력 검증 확인 서류 제출 안내

지원자는 국외 초·중·고교 재학사실 증명 및 고교 졸업(예정) 증명/초·중·고교 성적 증명에 대해 아래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본 모집요강 p.32 참고) 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서류
-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서류(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한 해당국 영사 확인도 가능)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2007. 7. 14.부 우리나라에 발효)
-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상호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 (출입국심사과-8354, 2007.8.13.)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절차]

가. 공문서(국·공립학교 등)

해당국가 공문서 발급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방문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심사 ▶ 아포스티유 발급

나. 사문서(사립학교 등)

해당국가 사문서 발급 ▶ 해당국가 공증사무소 공증*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방문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심사 ▶ 아포스티유 발급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 가능함

●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2025. 3. 30. 기준)**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오만,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아일랜드(쿠크군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확인: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https://www.hcch.net/)

IX.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관련 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의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당 대학 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다수의 전형에 지원 가능
- 6개의 전형에는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이 포함됩니다.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 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전형 내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는 무효로 처리되어 접수가 취소됩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지원 횟수 제한사항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2. 등록(「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

가.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해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등록 유의사항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힌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포기 기간 중에는 등록포기 요청을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형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입학한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대학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합니다.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우리 대학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4. 약학과 졸업성과제도 프로그램 운영

우리 대학 약학과는 본 대학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성과제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수여부를 졸업요건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은 입학 후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X. 전형료

1. 전형료

구분		전형료
입학정원의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120,000원
정원의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0,000원
	북한이탈주민	12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우리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 전형료 반환 시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2.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반환

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을 정산하여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2027년 4월 예정)

나. 입학전형료의 반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환 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3.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 및 「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전형료 반환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기타 사유(지원포기 등)에 의한 전형료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가 지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공제하고 전형료 환불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원서접수 개시일[2026. 7. 7.(화)] 이후 발급 서류를 서류제출 마감일[2026. 7. 16.(목)]까지 제출해야 함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X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1. 최초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26. 8. 28.(금) 11:00

나. 방법: 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duksung.ac.kr)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 최초합격자의 경우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 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최초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가. 온라인 문서등록 기간: 2026. 12. 21.(월) 09:00 ~ 12. 23.(수) 15:00

나. 온라인 문서등록이란?
온라인 문서등록은 별도의 등록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 문서등록 절차를 통해 덕성여자대학교에 등록할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 (enter.duksung.ac.kr) 합격자 조회 후 '온라인 문서등록' 버튼 클릭	▶	본인 인증 등 안내에 따라 반드시 최종 완료단계까지 절차 진행	▶	최종 완료 후 '온라인 문서등록' 확인증 출력 후 보관

다. 합격자는 반드시 입학 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서 「온라인 문서등록」을 지정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라. 온라인 문서등록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등록 포기자로 처리됩니다.

마.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한 후 최종 등록기간[2027. 2. 10.(수) 09:00 ~ 2. 12.(금) 16:00] 내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바. 예치금 납부(또는 온라인 문서등록)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함),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3. 미등록충원 안내(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발표기간: 2026. 12. 23.(수) 19:00 ~ 12. 29.(화) 18:00
※ 충원합격자 통보 마감일시: 2026. 12. 29.(화) 18:00

나. 온라인 문서등록 기간: 2026. 12. 24.(목) ~ 12. 30.(수) 16:00

다. **충원합격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합니다.** 지원자는 충원합격자 통보기간 중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통화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 전형기간 중 연락처(지원자 연락처 및 추가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입학원서 수정요청 게시판)을 통해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마. 충원합격자에 대한 전화통보 시 통화 내용을 녹취합니다.

바. 타 대학 등록 후 우리 대학에서 충원합격 통보를 받고 우리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후 (시급한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먼저 포기 의사를 타 대학에 알려야 함) 우리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 이중 등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되기 때문에, 등록을 포기한 대학으로부터 반드시 등록 확인 예치금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단, 등록포기원을 제출하였으나 대학 사정상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이 경과한 후 환불받는 경우는 이중 등록이 아닙니다.

4. 등록포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가. 등록포기 기간: 2026. 12. 22.(화) ~ 12. 29.(화)

※ 등록포기 마감일시: 2026. 12. 29.(화) 18:00

※ 위 기한을 지나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의 충원합격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는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등록포기자는 마감시간 전에 포기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enter.duksung.ac.kr)에 접속하여 신청

다. 등록포기 및 환불을 요청할 때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지원자 연락처 및 추가연락처로 SMS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대학 합격이 취소되면 추후 번복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 후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포기 마감일시 [2026. 12. 29.(화) 18:00] 이후, 등록포기를 하는 경우 즉시 우리 대학 입학관리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02-901-8189, 8190).

5. 등록금 납부기간

가. 등록기간: 2027. 2. 10.(수) 09:00 ~ 2. 12.(금) 16:00까지

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 후 등록포기자'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되니 반드시 해당 기간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XII. 기숙사 및 기타사항 안내

◆ 우리 대학의 기숙사는 10~13명이 하나의 공간(UNIT)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도록 설계된 콘도미니엄식으로 각 UNIT에는 1인실, 2인실, 3인실 등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율성을 함양하고, 협조와 배려 등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게 됩니다.

1. 시설현황

가. 규모

- 가온 I 관: 지하1층, 지상4층, 2개동, 31개 UNIT(연면적 8,122㎡)
- 가온 II 관: 지하1층, 지상 8층, 1개동, 16개 UNIT(연면적 4,086㎡)
- 국제기숙사: 지하1층, 지상 4층, 1개동, 8개 UNIT(연면적 1,999㎡)

나. 수용인원

- 가온 I 관: 352명(1인실 104명, 2인실 248명)
- 가온 II 관: 191명(1인실 65명, 2인실 124명, 장애인실 2명)
- 국제기숙사: 97명(1인실 12명, 3인실 84명, 장애인실 1명)

※ 국제기숙사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 우선 선발 후 공실 발생 시 개강 후 내국인 학부생 대상으로 추가 모집 진행

2. 2027학년도 신입생 입사 안내

가. 신입생은 2인실만 신청 가능

나. 입사 안내에 대한 사항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

다. 문의처

- 전화번호: 02-2001-8000, 8009
- 홈페이지: www.duksung.ac.kr ⇒ 대학생활 ⇒ 기숙사
- 이메일: dormitory@duksung.ac.kr

3.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안내

가. 대상: 국내에 체류하고 우리 대학에 등록하는 외국인 학생

나. 내용: 외국인 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며, 적용 시기는 체류자격 별로 다음과 같음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유학(D-2)	최초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상기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임

XIII. 입학상담 및 교통편 안내

1. 입학상담 안내

가. 입학정보 안내

- 덕성여자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www.duksung.ac.kr → 입학안내
- 입학 홈페이지: enter.duksung.ac.kr

나. 입학상담

- 전화상담: 02-901-8189, 8190

2. 교통편

가. 위치

- 주소: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 427호 입학처
-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 사거리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300m

나. 지하철

- 우이신설경전철 4.19민주묘지(덕성여대)역 1번 출구 도보 7분
- 4호선 수유역 하차, 3번, 6번 출구 덕성여대행 버스(120번, 163번) 이용

다. 버스: 우이동행(덕성여대입구 하차)

- 109번, 120번, 144번, 151번, 163번

3. 약도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수학기간 기록표

모집단위		수험번호 ※ 원서접수 완료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Home : H·P :
지원자격 구분	국외근무자 자녀(☐ 국외파견재직자 ☐ 현지취업자 ☐ 현지자영업자)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학교명 (학교 소재 국가)	재학기간		학년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 간	재학기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고등학교까지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전체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중·고교과정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서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재학기간(해당 학년과 학기)에 ↔ 표시를 하여 제출합니다.

※ 13학년제의 경우, 본 모집요강 9페이지를 참고하여 Grade 기준으로 작성 바랍니다.

구분	외국거주기간		근무처	소재지※(근무/체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 간	거주기간		국가명(도시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보호자 성명 (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보호자 성명 (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위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학력조회동의서

DUKSUNG WOMEN'S UNIVERSITY

33, Samyangro 144-gil, DoBong Gu, Republic of Seoul 01369, Korea
Phone: 82-2-901-8189 Fax: 82-2-901-8690 E-mail: ipak@duksung.ac.kr

LETTER OF AGREEMENT(학력조회 동의서)

To whom it may concern: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_____).

I have applied to Duksung Women's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7 academic year and agreed to allow Duksung Women's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Duksung Women's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transcripts.

< Student's records >

◎ Name: _____

◎ Student ID Number: _____

◎ Date of birth: _____ - _____ - _____

◎ Date of admission (transfer): _____ - _____ - _____

◎ Date of graduation (withdrawal): _____ - _____ - _____

< School Information >

◎ School Name: _____

◎ Telephone Number: _____

◎ Fax Number: _____

◎ E-mail: _____

Sincerely yours,

☐ Signature: _____

☐ Date: _____

★ 학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국외에서 재학한 중·고교별 수만큼 작성해야 함**

★ School Information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번호가 아닌 **학적을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후 부여받은 본 대학교 수험번호임

수험번호	

제3국 수학기간 사유서

전형구분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근무 기간 / 지원자 수학 기간					
구분		국가명	전입 년월일	전출 년월일	기간
보호자 (근무)	1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개월
	2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개월
	3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개월
지원자 (수학)	1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개월
	2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개월
	3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월 일 (학년 학기)	년 개월

* 지원자 수학기간 기록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제3국 수학사유

본인은 제3국 수학기간 사유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향후 입학지원 불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합격 후 제출]

유학경비 부담서약서

■ 지원자 인적 사항			
수험번호		성명	
모집단위			
전형구분	☐ 국외의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유학경비 부담자(기관)

- 성명(기관명):
- 관계:
- 직업(개인인 경우):
- 주소:
- 연 락 처:

본인은 상기 지원자가 귀 대학교 재학기간 중 정상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유학 경비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7년 월 일

보증인: (서명 또는 인)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전형구분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연번	활동 구분	활동명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내용 (100자 이내)	증빙 페이지
1					
2					
3					
4					
5					

[작성 가이드] (본 모집요강 p.16-17 참고)

1.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며, 학교 및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등을 통하여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진 및 발급기관이 없는 비문서 제출 불가하며, 기재 시 평가 제외)
2. 활동구분에는 아래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표기합니다.(최대 5개 작성 가능)

㉮ 비교과 활동서류	소속학교(기관) 수상경력,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증빙서류
㉯ 표준화 학업입증서류	IB, AP, SAT, ACT, A-Level 성적 등
㉰ 어학 증빙서류	증빙하고자 하는 언어의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등),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등

3. 활동내용은 활동명과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내용과 지원자의 역할,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작성합니다.
4. 교사추천서 또는 제3자의 기록을 옮겨적는 것은 불가하며, 지원자의 직접적 서술만 기록으로 인정합니다.
5. **입증서류 증빙은 활동별 A4용지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축소 및 확대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표준화 학업입증서류와 비교과 활동서류는 발행기관에서 상장,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1매의 리스트로 발급하는 경우는 페이지 관계 없이 인정합니다.**
6. **모든 성적 증빙(어학 증빙 서류 등)은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고등학교 재학 당시 취득한 성적만 인정). 응시한 지역은 국내외 어느 곳이어도 무방합니다.**
7. **학업입증서류 및 공인어학성적 제출 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적표 우측 상단에 해당 사이트의 ID, PW를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활동증빙서류 목록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향후 입학지원 불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 사유서

전형구분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명 (해당사항 체크)	☐ 학기결손/중복 ☐ 월반 ☐ 조기졸업 ☐ 휴학 ☐ 국내체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및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 기타( )				

세부내용

[작성 가이드]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해당학교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본인은 사유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취소,
향후 입학지원 불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재외 한국학교 현황(2026. 3. 기준)]

국가	학교명
일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중고등학교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소중고등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광저우한국학교
대만	타이뻬이한국학교
	까오숑한국국제학교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국제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

덕성여자대학교
Campus Map

DUKSUNG WOMEN'S UNIVERSITY

쌍문캠퍼스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1. 정문·대학본부
2. 스머프동산
3. 인문사회관
4. 대강의동
5. 차미리사기념관
6. 후문
7. 학생회관
8. 도서관·대학원
9. 민주동산
10. 영근터
11. 덕우당
12. 테니스장
13. 유아교육관
14. 대운동장
15. 예술관
16. 자연관·비엔나숲
17. 약학관·아트홀
18. 덕성하나누리관 & 라온센터
19. 국제관
20. 기숙사(가온 I 관, 가온 II 관)
21. 국제기숙사

종로캠퍼스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

1. (현)특수대학원(B관)
2. (현)평생교육원(D관)
3. 운현초등학교
4. 운현궁 양관(A관)
5. 운현유치원
6. 육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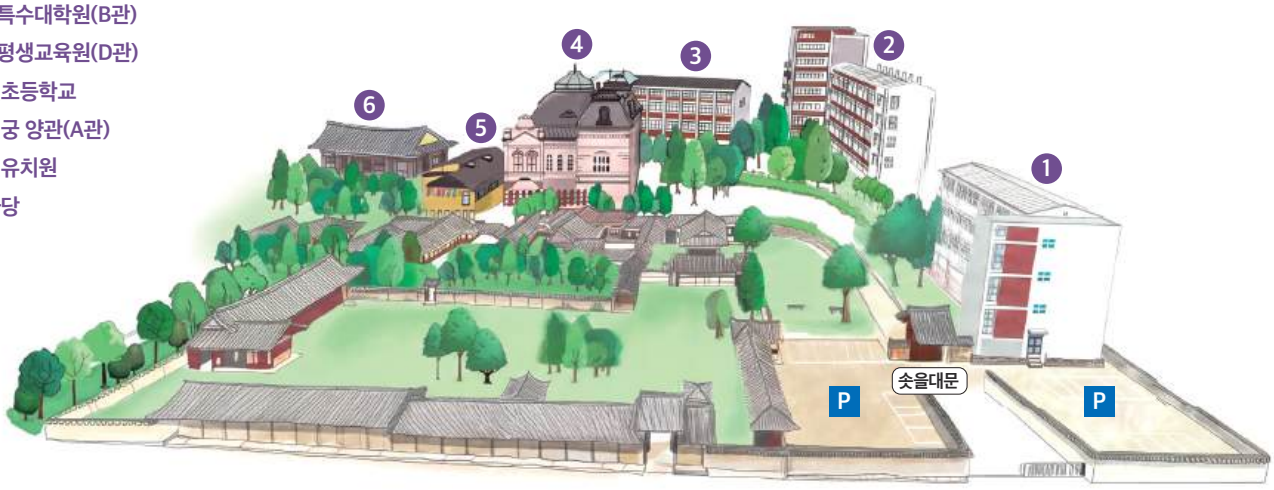

입학정보 안내

덕성여자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www.duksung.ac.kr ➲ 입학
입학처 홈페이지 enter.duksung.ac.kr
입학처 이메일 ipak@duksung.ac.kr

입학상담

방문상담 : 덕성여자대학교 쌍문캠퍼스 차미리사기념관 427호 입학처
전화상담 : 02-901-8189, 8190
덕성여자대학교 쌍문캠퍼스 [우편번호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 [우편번호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